
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
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제2항 [별표 4]에서 정한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에서 도시형공장·벤처기업집적시설·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용지를 협의양도자가 조성원가의 80%로 공급받고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공급토지 전체를 환매하도록 한다.

[별표 3] 택지공급가격기준 중 조성원가이하의 용도 란에서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초·중·고등학교 공급가격을 모든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한다.

[별표 4]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 용도 란의 “종교용지”에 해당하는 공급대상자 란의 협의양도자(종교법인 소유토지)에 해당하는 공급가격 란의 “기준면적 : 조성원가의 110%”를 “기준면적의 120% : 조성원가”로 하며, 같은 용도 란 중 “도시형 공장·벤처기업집적시설·소프트웨어 사업용

시설”에 해당하는 공급대상자 란에 “협의양도자”를 공급방법
란에 “수의계약”을 공급가격 란에 “기존면적 : 조성원가의
80%, 추가면적 : 감정가격”을 각각 신설한다.

부 칙(2009.5.29)
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②(학교용지 공급가격에 관한 적용례)[별표 3] 중 학교용지의
공급가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
례법」 개정법률 시행일(2009.5.28) 이후 최초로 택지개발사
업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하며, 다만,
2006년 7월 19일부터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
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신청
하거나 승인받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학교용지 중 「학교용
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학교용지
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
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, 고등학교
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
한다.

③(종교용지 공급가격에 관한 적용례)[별표 4] 중 종교용지의

공급가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④(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가격에 관한 적용례) [별표 4] 중 도시형공장·벤처기업집적시설·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중 협의양도자에 대한 공급가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최초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) ①~⑤ (생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18조(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) ①~⑤ (현행과 같음) ⑥제2항 [별표 4]에서 정한 택지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중에서 도시형공장·벤처기업집적시설·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용지를 협의양도자가 조성원가의 80%로 공급받고 5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공급토지 전체를 환매하도록 한다.</p>

[별표 3] 택지공급가격기준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구분	용 도 별	공 급 지 역			구분	용 도 별	공 급 지 역		
		수도· 부산권	광역시 시	기타 지역			수도· 부산권	광역시 시	기타 지역
조성원가 이하	○ 학교용지				조성원가 이하	○ 학교용지			
	- 초·중	50	50	50		- 초·중·고	무상	무상	무상
	- 고	70	70	70					
	- 200세대규모 미만 자구의 초·중·고	100	100	100					
주: 1.~3. (생략)					주: 1. ~3. (현행과 같음)				

[별표 4]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

현행				개정안			
용도	공급대상자	공급방법	공급가격	용도	공급대상자	공급방법	공급가격
종교용지	· 협의양도자(종교법인 소유토지) · 기타 실수요자	수의계약 추첨	· 기존면적: 조성원가의 110% · 추가면적: 감정가격 감정가격	종교용지	· 협의양도자(종교법인 소유토지) · 기타 실수요자	수의계약 추첨	· 기존면적의 120%: 조성원가 · 추가면적: 감정가격 감정가격
도시형공장·벤처기업집적시설·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	· 국가, 지자체 · 중소기업진흥공단(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<u><신설></u> · 기타 실수요자(관할지자체장의 추천) · 기타 실수요자	수의계약 수의계약 <u><신설></u> 수의계약 추첨	조성원가 조성원가(단,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) <u><신설></u> 감정가격 감정가격	도시형공장·벤처기업집적시설·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	· 국가, 지자체 · 중소기업진흥공단(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· 협의양도자	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추첨	조성원가 조성원가(단,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) <u><신설></u> · 기존면적: 조성원가의 80% · 추가면적: 감정가격 감정가격
주: 1.~2. (생략)				주: 1.~2. (현행과 같음)			